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시 신청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2 이상 동의규정을 삭제하여 지정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요건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3조)

- 신청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2 이상 동의 절차 삭제
-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중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추가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 마련 (안 제3조, 안 별지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 3) 입법예고 : 2022. 5. 4. ~ 5. 24.
- 4) 규제심사 및 위원회 협의 : 원안동의
-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을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구역 내 소상공인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로, “신청”을
“지정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를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로 한다.

3. 해당 구역의 지면과 면적

4.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한 경우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토지 면적: m ² , 건물 연면적: m ² , 영업장 면적: m ²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주소	면적(m ²)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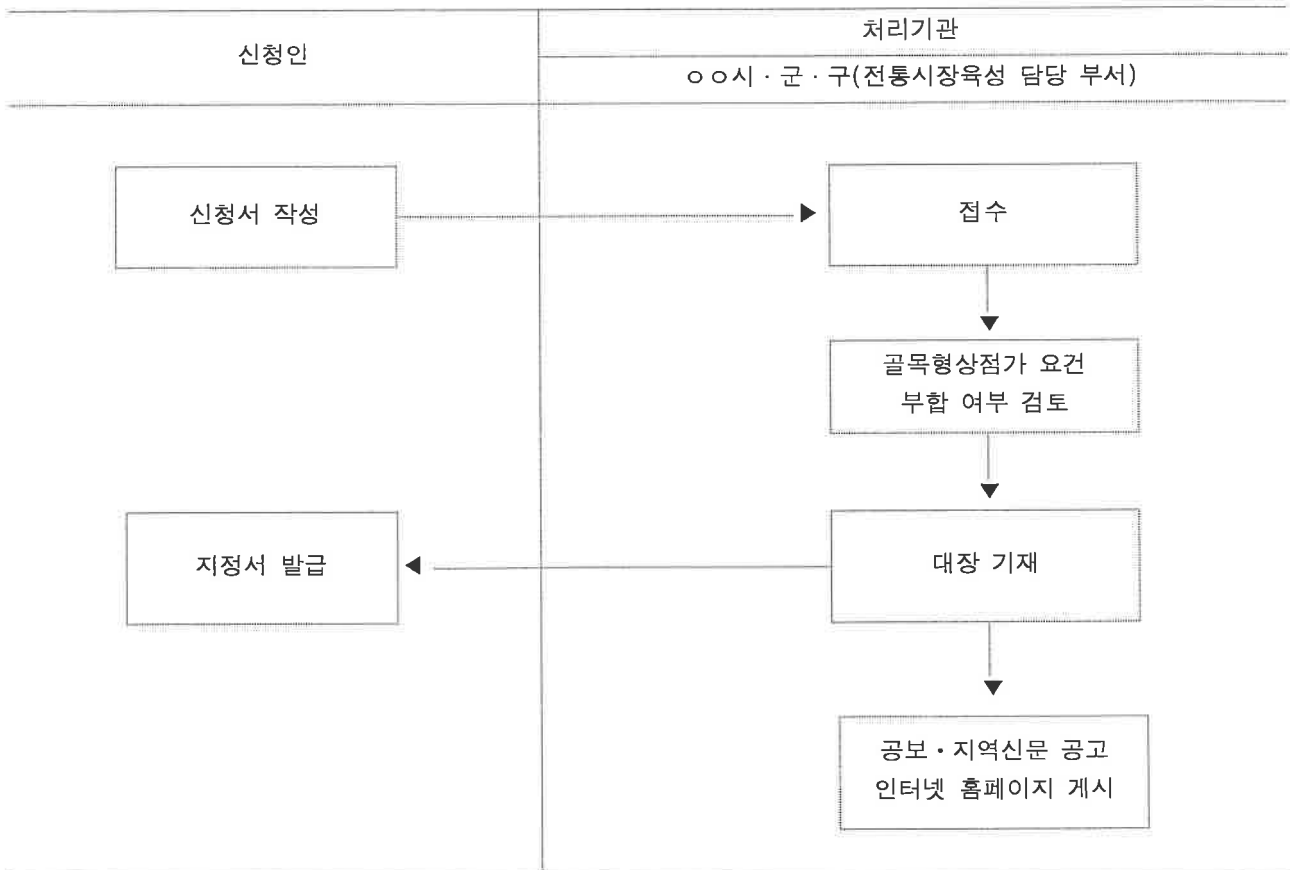
서대문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1. 상점가 명 :
2. 대표자 성명 :
3. 소재지 :
4. 면적/점포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대문구청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동의를 수에서 제외한다.</u></p> <p>1. (생략)</p> <p>2. <u>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동의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u></p> <p>3. <u>해당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u></p> <p><u><신설></u></p> <p>4. (생략)</p> <p>5. (생략)</p> <p>② (생략)</p> <p>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p>	<p>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 <u>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구역 내 소상공인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u> <u>----- 지정신청-----.</u> <u><후단 삭제></u></p> <p>1.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3. <u>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u></p> <p>4. <u>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u></p> <p>2. (현행 제4호와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 <u>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u></p>

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 3. (생략)
- ④ (생략)

<신설>

에게 발급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상점가 개요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토지 면적: m ² , 건물 연면적: m ² ,		
		영업장 면적: m ²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주소	면적(m ²)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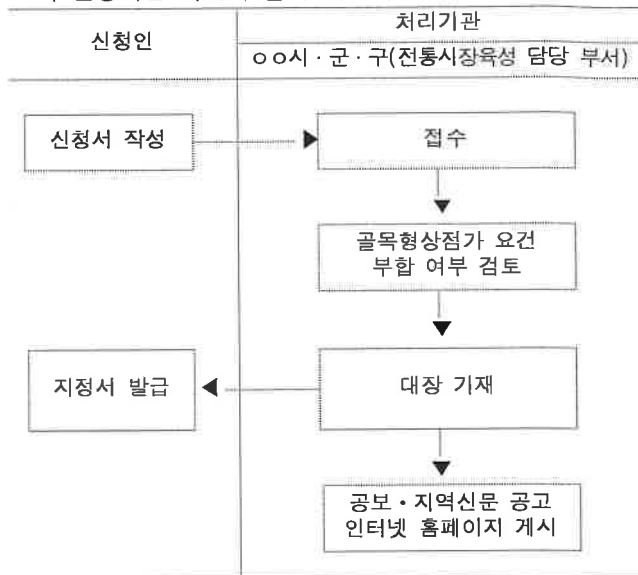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 제항제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재(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인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인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설>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1. 상점가 명 :
2. 대표자 성명 :
3. 소재지 :
4. 면적/점포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대문구청장

직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시 신청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2 이상 동의 규정을 삭제하여 지정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행정8급 조선화(330-4910)

관 계 법 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5. 28., 2015. 11. 20., 2017. 2. 8., 2017. 7. 26., 2018. 6. 12., 2020. 2. 4., 2020. 2. 11.>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8. 11.]

참 고 사 항

□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 수정알림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108(2022.1.11.)]

-골목형상점가 지정시 동의요건 등의 내용을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수정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2 이상 동의 요건 삭제